

中國市場經濟法律制度的建設与完善

崔勤之*

目次

- 一. 經濟體制的變革
- 二. 法律制度的廢立
- 三. 市場經濟法律制度的建設
 - 1. 規範市場主體的法律
 - 2. 規範市場主體行爲的法律
 - 3. 規範市場秩序的法律
 - 4. 規範政府宏觀調控的法律
 - 5. 規範勞動和社會保障的法律
- 四. 市場經濟法律制度的完善

* 中國社會科學院 教授

中國經濟體制改革的目標是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而市場經濟與法制建設之間有着深刻的內在聯系。江澤民主席提出，社會主義法制建設同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建設是密不可分的。要建立和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必須要有與之相適應的比較完備的社會主義法制。因此，建設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制度，以適應社會主義市場經濟和發展國民經濟的需要，不僅是中國法律建設史上一項前無古人的開創性工作，同時也是目前中國法律建設的當務之急。

一. 經濟體制的變革

經濟體制改革前30年，中國實行的是高度集中的計劃經濟體制。在建國初期和第一個五年計劃期間，我國面臨着實現全國財政經濟統一，對資本主義工商業進行社會主義改造和開展有計劃的大規模經濟建設的繁重任務，所以，我們在繼承解放區的傳統作法和借鑑前蘇聯經驗的基礎上，逐步建立起了全國集中統一的計劃經濟體制。當時，由于我國經濟發展水平不高，經濟結構簡單，建設規模尚小，以及發展目標單一等等，所以計劃經濟取得了相當的成功。不僅使我國經濟得以迅速恢復，而且逐步建設起了100多項工業骨幹工程，發揮了集中力量辦大事的優勢。

然而，隨着經濟規模的擴大，經濟結構的複雜，發展目標趨向多元，以及人民生活需求的提高和國際經濟聯系的增多等等，這種以高度集中的計劃安排和行政指揮為特徵的經濟體制的弊端，便日益暴露出來，越來越成為中國經濟發展的制約因素。主要表現在：

1. 計劃經濟以國有制為追究目標，在生產關係方面強調“一大二公”，排擠或者限制非國有制經濟的發展，制止正當競爭，使經濟難以搞活；
2. 在社會資源分配方面，限制生產要素的流動，使資源從低效益部門向高效益部門流動的合理機制長期不能形成，既造成資源的不合理分配，帶來產業結構，地區經濟結構，技術結構，就業結構的嚴重失調，又造成資源的嚴重破壞和浪費；
3. 在社會產品分配上，計劃經濟實行的是平均主義，職工喫企業的“大鍋飯”，企業喫國家的“大鍋飯”，壓抑了生產者和經營者的積極性和創造性；
4. 在經濟管理上，國家對社會經濟活動實行行政的，指令的，直接的控制和管理，造成政企不分，以政代企，使投入高，產出低，效益差成為企業里普遍的現象。所有這些都使本來應該生機盎然的社會主義經濟在很大程度上失去了活力，從而嚴重地束縛了我國社會生產力的解放和發展。可以

說，從1958年到1978年整整20年時間里，中國社會生產力沒有多大發展，人民群眾的物質文化生活條件沒有得到應有的改善。1978年中國人均國民生產總值不到250美元；工人的平均月工資只有幾十元人民幣；農村的大多數地區還是處於貧困狀態，其中一億人口還過着連溫飽問題都沒有解決的窮日子。

我們黨對經濟體制改革前國民經濟發展緩慢問題進行了反思。在1978年召開了中共十一屆三中全會，果斷提出把黨和國家的工作中心轉移到經濟建設上來，作出了實行改革開放的偉大決策。這次全會以後，隨着改革的深化和開放的擴大，中國實際上已經逐步在實行從高度集中的計劃經濟向社會主義市場經濟的轉變。這個轉變遇到了只有計劃經濟才是社會主義，市場經濟則是資本主義這樣一種傳統觀念的障礙。世界範圍內幾百年經濟發展的實踐和我國經濟建設30年的經驗教訓，無可爭辯地證明：由市場在社會資源配置中起基礎性作用的市場經濟，是發展現代化大生產的理想的經濟體制。要接受這種認識，就需要人們解放思想，轉變觀念。在這個過程中，鄧小平作出了重要貢獻。自1979年起他就曾多次指出：“說市場經濟只存在于資本主義，只有資本主義的市場經濟，這肯定是不正確的。”“社會主義也可以搞市場經濟。”“社會主義和市場經濟之間不存在根本矛盾。”“計劃和市場都是方法嘛。只要對發展生產力有好處，就可以利用。”在鄧小平多次講話的不斷推動下，1982年中共十二大提出發展國民經濟要以計劃經濟為主，市場調節為輔；1984年十二屆三中全會指出，商品經濟是社會經濟發展不可逾越的階段，我國社會主義經濟是公有制基礎上的有計劃商品經濟；1987年十三大提出有計劃經濟應該是計劃與市場內在統一的體制；1989年十三屆四中全會後提出建立適應有計劃商品經濟發展的計劃與市場調節相結合的經濟體制和運行機制。1992年初，在南方的談話中，鄧小平明確提出：“計劃經濟不等于社會主義，資本主義也有計劃；市場經濟不等于資本主義，社會主義也有市場。”這就根本上解除了傳統觀念把計劃經濟和市場經濟看作是屬於社會根本制度範疇的思想束縛，對社會主義可不可以搞市場經濟這個長期爭論不已並且阻礙我們的問題，作了一個清楚的，精闢的回答。根據鄧小平關於社會主義也可以搞市場經濟的一系列論述，1992年10月中共十四大明確確定把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作為中國經濟體制改革的目標。1993年11月十四屆三中全會通過了〈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若干問題的決定〉。它規定，在本世紀末，初步建立起社會主義市場經濟新體制和適應社會主義市場經濟的法律體系。這是一個實現從舊經濟體制向新經濟體制過渡，加快發展社會生產力的行動綱領。至此，我們終於徹底解決了有關具體經濟體制的選擇這個關係到我國現代化建設全局的重大理論問題

和實踐問題，為國民經濟的騰飛創造了前提性的條件。

衆所周知，市場經濟是市場在配置資源中起基礎性作用的經濟。市場經濟是與各國的社會制度和具體歷史條件聯系在一起的。中國實行的市場經濟，之所以稱為社會主義市場經濟，就因為它是與社會主義的社會制度結合在一起來運行的。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主要具有以下兩個特征：其一，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是建立在以公有制為主體，多種所有制經濟共同發展基礎之上的。這是由我們國家的社會主義性質所決定的。公有制經濟包括國有經濟和集體經濟，以及混合所有制經濟中的國有成分和集體成分。公有制的主體地位主要體現在：公有資產在社會總資產中占優勢；國有經濟控制國民經濟命脈，對經濟發展起主導作用。又由於中國正處在社會主義初級階段，需要在公有制為主體的條件下發展多種所有制經濟，因此，個體、私營等非公有制經濟是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的重要組成部分，國家對其鼓勵、引導，使之健康發展。其二，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以實現共同富裕為原則。在中國，公有制占主導地位，同時在分配制度上，實行以按勞分配為主體，其他分配方式為補充，兼顧效率與公平的原則。此外，國家還通過社會政策和調節手段，既鼓勵先進，促進效率，允許拉開收入差距，又防止收入差距過分擴大，形成兩極分化，隨着國民經濟的發展，逐步實現社會主義全體成員的共同富裕。

盡管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具有上述獨自固有的特征，但它與計劃經濟不同，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是商品經濟，是一種以交換為直接生產目的和聯系方式的經濟形態。構成市場內容的經濟關係，不是計劃分配和無償調撥關係，而是商品交換關係。因此，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作為市場經濟，不能不具有一切市場經濟相同的共性。即：1. 自主性。在市場經濟中，市場主體依法充分享有意志自由，他門自主自願地通過協商決定他門之間的關係，實施法律行為，獨立地取得權利和承擔義務。2. 平等性。市場主體法律地位一律平等，他門之間沒有等級高低之別，任何人都沒有凌駕於他人之上的特權。3. 等價有償性。商品交換必須對價，有償，不允許無償占有他人勞動。4. 誠實信用性。誠實信用是市場經濟活動的道德標準，它要求市場主體在進行一切交易時都必須講誠實，守信用。5. 自負盈虧性。市場主體合法取得的權益到法律的切實保護，同時交易的責任，經營的風險也要由自己來承擔。6. 公平競爭性。從一定意義上講，市場經濟就是優勝劣汰的競爭經濟。一切市場主體均以平等的資格，在平等的基礎上，依法相互進行競爭。

二、法律制度的廢立

經驗告訴我們，任何一種經濟制度的建立和運行，都需要相應的一定形式的規則和手段予以保障和支持。而市場經濟是法治經濟，是依照反映市場經濟客觀規律的法律來治理的經濟。這是由構成市場內容的商品交換關係所決定的。即使是最簡單的市場關係，例如商品賣買關係，也是一系列不成文的或成文的法律規則為基礎的，可見市場經濟對於法律的依賴關係。同樣，中國的社會主義市場經濟也需要法律的規範、引導、制約和保障，嚴格按照法律來運作。另外，中國社會主義的市場經濟與發達資本主義國家的市場經濟，所形成的道路是大相逕庭的。資本主義市場經濟是自然而然逐步形成的，它歷時數百年的漫長道路。資本主義市場經濟法律制度，也是伴隨着市場經濟的發展而長期逐步形成的。中國的社會主義市場經濟建立的途徑則不一樣，它不是自然而然形成的，而是在否定行之多年的計劃經濟的基礎上逐步建立的。也就是說，社會主義市場經濟只能通過由計劃經濟向市場經濟轉變，否定計劃經濟，確定市場經濟的改革方式來建立。這一改革是體制上的根本性變化，必須有領導，自上而下，漸漸進行。因此，經濟體制改革的實踐，也迫切地呼喚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制度。

法律作為上層建築的重要組成部分，是建立在一定的經濟基礎之上的，並決定於這個基礎。與此同時，作為上層建築的法律，又通過經濟基礎的中介，反作用於生產力，而法律對經濟的這種反作用，則是通過人的有意識的活動實現的。所以，在中國，要使法律適應市場經濟的需要，人們必須堅決摒棄與市場經濟不相適應的陳舊法律理論和觀念，否則，市場經濟法律制度就不可能建立。無庸諱言，中國的法律理論是建國初期在繼承前蘇聯法律理論的基礎上形成的，在改革開放前的長期內基本反映了計劃經濟體制的本質特征和要求，而現在進行經濟體制改革，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是經濟體制的根本變革，理所當然地要求人們摒棄與市場經濟不相應的陳舊法律理論和觀念，主要有：

(1) 國家兩種身分合一的理論。

由於受前蘇聯理論的影響，中國舊的法律理論不區分作為公權者的國家與作為所有者的國家，而是強調國家兩種身分的合一。舊理論認為，社會主義國家最突出的特點之一，就在於把全部國家權力同所有人的權力結合起來掌握在自己手中，就在

于國家權力同所有人的一切權力密切不可分割的結合。這種理論正是“政企不分”的舊體制本質特征的法理依據。由此決定了社會主義國家承擔了龐大的幾呼是無所不為的經濟職能，國家依公權者和財產所有者的雙重身分直接管理經濟。這種理論顯然違反市場經濟的要求。而實行市場經濟的西方國家，在自由放任的市場經濟條件下，國家只承擔有限的經濟職能：在前後奉行凱恩思經濟政策的市場經濟條件下，國家承擔了繁重的經濟職能。但無論是奉行自由放任還是干預經濟政策，國家作為公權者的身分與國家作為財產所有者的身分，是嚴格區分的。因此，中國要建立適應市場經濟需要的法律制度，就必須摒棄不區分國家兩種身分的舊法律理論，將作為公權者的國家與作為財產所有者的國家嚴加區分，使國家作為全民所有制財產所有者身分進行的經濟活動，不再屬於國家經濟職能。國家所承擔的經濟職能僅限于基于國家公權力對市場經濟進行適度干預，專注于行使應有的對市場進行管理和宏觀調控的經濟職能。只有這樣，才符合市場經濟本質的要求。

(2) 國有企業經營權理論。

這一理論是20世紀40年代由前蘇聯民法學家維尼吉克托夫提出來的。按照這個理論，國家對於國有企業財產享有所有權，企業只享有經營權。其物質基礎是蘇聯高度集中的計劃經濟體制。國有企業經營權理論被中國繼承，對中國法律理論產生很深的影響。這一法律理論的根本缺陷在于“政企合一”，使國有企業成為行政機關的附屬物，為舊體制下國家直接運用行政手段，指揮和管理經濟提供了法理根據。中國從改革開放一開始，這一法律理論就受到衝擊和挑戰并日益成為改革開放和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的障礙。只有堅決拋棄國有企業經營權理論，承認國有企業作為企業法人對其財產享有所有權，才能真正實現企業體制的改革，使國有企業成為真正的市場主體。

(3) 前蘇聯的經濟法理論。

這是20世紀50年代初形成的，由前蘇聯現代經濟學派代表人物拉普捷夫提出的經濟法理論。拉普捷夫的經濟法理論于70年代末傳入中國，對中國經濟法學界產生了巨大的影響。這種經濟理論本質上是一種闡發計劃經濟體制合理性的主張。其要害在于強調“計劃組織因素與財產因素”的結合，強調“橫向經濟關係與縱向經濟關係”不可分割的聯系，把企業視為“經濟機關”，否認經濟關係的“商品性”。這一理論的實質

是鞏固和發展作為行政權力經濟的計劃經濟體制，完全違背中國所進行的經濟體制改革的方向，與我們所要建立的社會主義市場經濟是格格不入，相互抵觸的。只有堅決摒棄這一理論，人們的思想才能解放，經濟法學才能發展，才可能建立符合社會主義市場經濟本質的經濟法理論，為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制度提供可靠的科學的法理基礎。

中國在清除人們頭腦中陳舊理論和觀念的同時，對計劃經濟體制下形成的法律制度進行了改革。對不適應市場經濟體制需要的法律進行修改廢除，制定頒布適應市場經濟體制需要的新法律，以發揮法律對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發展市場經濟的重要作用。

(1) 修改廢除舊法律為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發展市場經濟開通道路。

中國經濟體制改革遇到的障礙之一是，規定保護計劃經濟舊體制的原有法律。因此，改革應該是從變法始，法律滯後，改革難以前進。中國恩的法律體系當中的大多數法律，是在中共十四大提出的建立和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之前制定的，有相當內容帶有計劃經濟體制的痕迹。只有通過法定程序，把這些不適應市場經濟體制需要的法律修改了，廢除掉，才能為經濟體制改革的順利推進開通道路，使改革置於堅實法制基礎之上，而不至於陷入與法律相抵觸的困境。例如：作為我國根本大法的〈中華人民共和國憲法〉(以下簡稱〈中國憲法〉)，為適應經濟體制改革，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需要，自1982年以來先後進行過四次修改，廢除不適應市場經濟體制的條款。僅就〈中國憲法〉第15條規定：“國家在社會主義公有制基礎上實行計劃經濟。”如果這條規定不改的話，中國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改革何以進行。1993年召開的中國人大八屆一次會議對中國憲法作了修改，其中一個重大的修改就是將前條修改為：“國家實行社會主義市場經濟。”為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提供了法律依據和保障。

另外，1994年5月中國國務院還作出了〈關於廢止1993年底以前發布的部分行政法規的決定〉，對已不適應當今社會主義市場經濟發展的〈關於燃料電力憑證定量供應辦法〉，〈關於人造板分配的暫行辦法〉等21個行政法規予以廢止，為建立市場經濟體制改革的順利進行開通道路。

(2) 制定頒布新法律為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發展市場經濟進行規範。

中國的改革是在一个人口衆多，幅員遼闊，發展極不平衡的大國中進行的。為避免造成不必要的混亂，引起不應有的反復，一切改革舉措必須嚴格依法進行。同時，中國的改革又是采取自上而下，漸進的方式推進的。因而這種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改革的前進，深化，必須靠制定體現市場經濟規律，反映改革進程的法律來引導，推動和促進，否則，改革無法正常進行。為此，改革開放以來，中國人民代表大會及其常務委員會已制定了法律和有關法律的決定375件，國務院制定的行政法規800多件，各地方性法規7,000多件，此外，國務院各部門和地方人民政府還制定和發布了25,000多件行政規章。這些法律，法規和規章的制定和實施，對推進經濟體制改革，發展市場經濟起到了十分重要的作用。

在中國經濟體制改革過程中，國有企業改革始終是整个經濟體制改革的中心環節。20多年來，國有企業改革的一切舉措，都是依照國家頒布的法律進行的。國有企業的改革大致可分為三個階段：第一個階段從1978年至1984年是擴權讓利。這是國有企業改革的初期階段，主要是擴大國有企業經營自主權和實行利改稅，讓利給國有企業，以此來增加國有企業的活力。為推動這些改革措施的實施，國務院頒布了一系列法規，如：〈關於擴大國營工業企業經營管理自主權的若干規定〉，〈關於進一步擴大國營工業企業自主權的暫行規定〉和〈關於國營工業企業利潤留成試行辦法〉等。第二階段從1985年至1991年是來用多種經營方式及兩權分離原則。這個階段為使國有企業增強活力，主要是允許國有企業采用承包，租賃等多種經營方式，以及對國有企業財產實行兩權分離的原則。為規範，引導國有企業采用多種經營方式，國務院先后頒布了〈全民所有制工業企業承包經營責任制暫行條例〉和〈全民所有制小型工業企業租賃暫行條例〉。與此同時，中國人大七屆一次會議通過了〈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該法確認了國有企業財產的兩權分離原則，即規定，國有企業的財產屬於國家所有，國家依照所有權和經營分離的原則授予國有企業經營管理。國有企業對國家授予其經營管理的財產享有占有，使用和依法處分的權利。第三個階段從1992年至現在是轉換經營機制，建立現代企業制度。為引導國有企業適應市場經濟要求，轉換經營機制，國務院發布了〈全民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營機制條例〉。特別是為適應國有企業建立現代企業的需要，中國人大常委會八屆五

次會議通過了〈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這對國有企業建立現代企業制度起到了引導和規範作用。20多年的實踐表明：正是新法律、法規的頒布和實施，促進了國有企業的改革，國有企業的管理體制和經營機制發生了深刻的變化，朝着適應市場經濟要求的目標邁進。

(3) 既改舊又立新為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發展市場經濟提供法律保障。

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改革要順利進行，市場經濟要健康發展，迫切需要法律來切實保障。我們通過修改舊法律，制定新法律來達到這個目的。法律對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改革的保障作用，主要體現在以下兩個方面：

一是經濟體制改革業已取得的成果，用法律形式固定下來，使之得到保障。例如：關於私營經濟問題。改革開放前，中國基本上是不允許私營經濟存在的。1978年中國人大五屆一次會議通過的〈中國憲法〉就明確規定：“中華人民共和國的生產資料所有制現階段主要有兩種：社會主義全民所有制和社會主義勞動群眾集體所有制。”“國家允許非農業的個體勞動者在城鎮或者農村的基層組織統一安排和管理下，從事法律許可範圍內的不剝削他人的個體勞動。同時，引導他們逐步走上社會主義集體化的道路。”改革開放後，隨着經濟體制改革的不斷深入，中國不僅允許存在而且還要發展私營經濟。為將這一改革成果用法律形式固定下來，從1982年以來，中國先后三次修改〈中國憲法〉的有關條款。最近一次修改是1999年中國人大九屆二次會議通過的〈中國憲法修正案〉將有關規定私營經濟的條文修改為：“在法律規定範圍內的個體經濟，私營經濟等非公有制經濟是社會主義市場經濟的重要組成部分。”“國家保護個體經濟，私營經濟的合法的權利和利益。國家對個體經濟，私營經濟實行引導、監督和管理。”在修改憲法的基礎上，中國還先后頒行了〈中華人民共和國私營企業暫行條例〉和〈中華人民共和國個人獨資企業法〉，為私營經濟的健康發展提供了法律保障。

二是運用法律武器制裁各種違法活動，打擊一切犯罪行爲，以保障經濟體制改革的健康發展。因為實行社會主義市場經濟是中國經濟體制上的一次根本性變革，它勢必遭致形形色色的干擾。所以，以國家強制力保證實施的法律對經濟體制改革的保障作用，就顯得十分重要。在這方面特別值得提及的是，中國人大八屆五次會議對〈中華人民共和國刑法〉(以下簡稱〈中國刑法〉)進行的修訂。這次的修訂將〈中國刑法〉第二編分則中的第三章“破壞社會主義經濟秩序罪”，修改為“破壞社會主義市場秩

序罪”。其內容也由原來僅有的15條，修改為8節89條，增加了妨害對公司，企業的管理秩序罪，侵犯知識產權罪和擾亂市場秩序罪等內容，使〈中國刑法〉對市場經濟的保障更加完善。

三．市場經濟法律制度的建設

中國進行的經濟體制改革，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建立和完善，必須要有健全完備的適應市場經濟發展需要的法律制度。只有作到有法可依，市場經濟才能有序運作，健康發展。由于市場經濟是市場主體，市場秩序，政府宏觀調控等多個基本運行環節所構成的一個龐大系統，它本身所涉及的社會關係範圍十分廣範，情況非常複雜，因而，以規範和保障市場經濟健康，順利運行為使命的法律，其本身也應該是達到一定數量并組成成為內容和諧有序形式完善統一的一個有機體系。中國自改革開放以來，經過20多年的不懈努力，市場經濟進行綜合調整的諸種性質各異，作用不同的法律部門組成的一個集合體，主要包括和涉及憲法以及民法，商法，經濟法，社會法，行政法，刑法等法律部門的法律。從這些眾多法律對市場經濟不同方面的規範和保障作用來看，中國的市場經濟法律制度主要包括以下五個部分：

1．規範市場主體的法律。

要發展市場經濟首先應規定市場主體資格。市場主體主要是企業。就從這一意義上講，企業立法是有關市場主體的立法。為適應市場經濟的要求，中國採取按照企業組織形式的立法模式，健全有關市場主體的立法。這主要包括：

(1) 公司法。

1994年7月1日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以下簡稱〈公司法〉)，是新中國的第一部公司法，是規定公司的設立，組織，運營，解散以及對內對外關係的法律。公司通常是指，依照〈公司法〉在中國境內設立的，以營利為目的的，社團法人。公司是現代企業典型的組織形式，是重要的市場主體。〈公司法〉規定，中國公司分為有限責任公司和股份有限公司兩種。有限責任公司是指，股東以其出資額為限對公司承擔責任，公司以其全部資產對公司的債務承擔責任的企業法人。股份有限公司是指，其全部資產分為等額股份，股東以其所持股份為限對公司承擔責任，公司以

其全部資產對公司債務承擔責任的企業法人。此外，〈公司法〉還充分體現了現實中國的特點，在有限責任公司中對國有獨資公司作了專門規定，以適應現有國有企業改建為公司的需要。

(2) 合夥企業法。

1997年8月1日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合夥企業法〉(以下簡稱〈合夥企業法〉)，是規定合夥企業的設立，組織，運營，解散及內部外部關係的法律。合夥企業是指，依照〈合夥企業法〉在中國境內設立的，由各合夥人訂立合夥協議，共同出資，合夥經營，共享收益，共擔風險，並對合夥企業債務承擔無限連帶責任的營利性組織。

(3) 獨資企業法。

2000年1月1日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個人獨資企業法〉(以下簡稱〈獨資企業法〉)，是規定個人獨資企業的設立，運營，終止及內部外部關係的法律。個人獨資企業是指，依照〈獨資企業法〉在中國境內設立，由一個自然人投資，財產為投資人所有，投資人以其全部財產對企業債務承擔無限責任的營利性組織。

2. 規範市場主體行為的法律。

在市場經濟中，市場主體能夠依照自己的意志自主的從事經營活動。但是，市場主體行為的自主，並非是為所欲為的，他的行為必須在法律規定的範圍內進行。市場主體的行為無不指向兩個方面，一是行使權利，二是履行義務。其中，行使權利是第一為重要的，是市場主體實現營利目的的直接形式。履行義務是第二為重要的，是市場主體實現營利目的的條件和保證。因此，中國市場經濟法律制度中，規範市場主體行為的法律，也無不以規範和保障市場主體各個方面的權利及其實現本質內容。這方面的法律主要有：

(1) 物權法。

物權法通常是指，調整公民，法人，非法人團體因直接控制和支配財產而產生的社會關係的法律。市場主體擁有自己的財產是商品交換的基礎。因而物權法是發揮市場經濟的前提性法律。中國改革開放以來，逐步建立起了物權法律制度。當今有關物權的法律規定分別表現在〈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以下簡稱〈民法通則〉)和

其他一些單行法律里。

1986年4月中國人大六屆四次會議通過，1987年1月實施的《民法通則》，是一部基本上反映市場經濟發展要求的法律，主要調整平等主體之間的財產關係。該法在第五章第一節財產所有權和與財產所有權有關的財產權中規定，財產所有權是指，所有人依法對自己的財產享有占有，使用，收益和處分的權利。保護全民，集體所有的財產和公民的合法財產。同時規定，經營權，使用權是與所有權有密切關係而又可以和所有權適當分開的重要財產權。這包括：第一，國有企業對國家授予它經營管理的財產享有經營權，受法律保護。第二，國家所有的土地，森林，草原，荒地，灘塗，水面，可以依法由全民所有制單位，集體所有制單位使用，國家保護其使用，收益的權利。第三，集體所有的或者國家所有由集體使用的土地，森林，草原，荒地，灘塗，水面，可以依法由個人或者集體承包經營，國家保護其承包經營權。第四，國家所有的礦藏，可以依法由全民所有制單位和集體所有制單位開采，也可以依法由公民採掘，國家保護合法的采礦權。

(2) 合同法。

合同法是調整公民，法人，其他組織因合同而產生的債權債務關係的法律。合同法是發展市場經濟的基礎性法律。從一定意義上講，市場經濟就是合同經濟，市場經濟就是在能夠自主交易的衆多主體之間，合同關係不斷產生，債務不斷履行，債權不斷實現的過程中存在和發展的。沒有了合同關係，沒有了規範和保障合同關係的合同法，便也沒有了市場經濟。改革開放以來，中國于1981年，1985年和1987年相繼頒行了〈中華人民共和國經濟合同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和〈中華人民共和國技術合同法〉。這三部合同法對保護合同當事人的利益，維護交易秩序，保障市場經濟的發展，發揮了重大的作用。

然而，隨着中國經濟體制改革的不斷深入，三法並存的合同法不僅依然存在着反映計劃經濟本質特征和舊法律理論的內容，而且它們分別規範不同的合同關係，相互間缺乏協調一致。為實現合同法的統一化，現代化，1999年3月中國人大九屆二次會議通過了〈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以下簡稱〈新合同法〉)，該法于同年10月施行。〈新合同法〉結束了三個合同法並立的局面，實現了交易規則的統一。它以保護當事人合法權益為立法目的，規定了反映市場經濟本質特征的合同自由原則，公平原則和誠實信用原則；規定了合同的訂立，效力，履行和違約責任。此外，還對賣買，借款，融資，租賃等15種合同作了具體規定，以更好地適應市場經濟的需要。

(3) 票據法.

票據法是規定票據制度，調整因票據活動而產生的各種社會關係的法律。中國經濟體制改革以來，票據制度逐漸得到恢復。票據在支付，匯兌，信用，抵銷債務以及融資等方面，發揮了重要的，不可替代的作用。1996年1月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票據法〉不僅使人們在日益發展的交易中，能更多更好地使用票據，而且也為發揮票據應有的作用，提供了法律保障，有力地推動着市場經濟的發展。

(4) 證券法.

證券法是調整因證券發行，交易和管理而產生的各種社會關係的法律。中國早在50年代就發行過國債，80年代初一些企業開始發行股票和企業債券，並設立了證券交易所，90年代初證券發行市場和證券交易市場已經全面形成。但是由於各種原因，中國關於證券交易方面的立法則明顯滯後於客觀需要。到90年代初，中國的證券交易主要依據〈公司法〉中有關股票，公司債券的發行與交易的規定；〈股票發行與交易管理暫行條例〉等行政法規；〈證券交易所管理辦法〉等行政規章以及監督會發布的規範性文件運行。

為改變立法滯後的局面，更好地保護投資者合法權益和社會公共利益，創造公開，公平，公正的證券發行，交易的環境，1998年12月中國人大常務會九屆六次會議通過了〈中華人民共和國證券法〉，1999年7月開始實施。該法對證券的發行，交易和監督管理作了規定，以確保證券市場健康地發展。

(5) 保險法.

保險法一般是規範保險合同當事人及其關係人的權利義務關係，和對保險業進行監督和管理的法律。1995年10月實施的〈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通過對保險總則，保險合同以及保險業設立與管理的規範，建立起以互助互濟形式，對交易的各種風險，人身危險，意外事故完善的保險制度，使企業和個人因特定危險事故或特定事件導致的損失，得到經濟上適當可靠的補償。進而保障社會安定和市場經濟健康發展。

3. 規範市場秩序的法律.

市場經濟法律制度的重要目標之一，就是規範和保障市場秩序。這包括堅持市場的完整性與統一性，創造平等競爭環境，維護公平競爭秩序，保障正當競爭者，廣大消費者和社會公共利益不被侵犯。目前，中國規範市場秩序方面的法律主要有：

(1) 反不正當競爭法.

競爭是市場經濟重要的運行機制之一。1993年12月實施的〈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當競爭法〉，是制止不正當競爭行爲的法律。所謂不正當競爭是指，經營者違反法律規定，損害其他經營者的合法權益，擾亂社會經濟秩序的行爲。該部法律對經營者在市場競爭中應當遵循的基本原則，不正當競爭行爲的範圍，禁止不正當競爭的執行機關，以及對反不正當競爭行爲的處罰等進行了規範。這對鼓勵和保護公平競爭，制止不正當競爭行爲，保護經營者和消費者的合法權益，保障市場經濟健康發展，起了積極的促進作用。

(2) 廣告法.

廣告既是展示企業自身形象的重要途徑，又是促進企業產品銷售的有效手段。廣告廣泛活躍於各種市場領域，對市場經濟秩序的建立和完善有着直接的和深刻的影響。1995年2月實施的〈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較詳細地規定了廣告主，廣告經營者和廣告發布者，在從事廣告活動時，應遵循的基本準則以及相應的法律責任。這對於規範廣告行爲，促進廣告業的健康發展，保障消費者的合法權益，維護社會經濟秩序，發揮廣告在市場中的積極作用，有着重要意義。

(3) 消費者權益保障法.

在市場經濟條件下，一方面是現代化的大公司，大企業，它們擁有強大的經濟實力，在市場活動中居于優勢地位；另一方面是廣大消費者，他們以分散的個體出現，經濟實力微弱，在市場活動中最容易受到傷害。這就要求市場經濟法律制度體現保護弱者的原則，擔負起保護消費者的責任，以維護正常的市場秩序。1994年1月實施的〈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較詳細地規定了消費者的權利，經營者

的義務，國家對消費者合法權益的保護，消費者組織，爭議的解決和法律責任等，為維護消費者的合法權益，提供了法律保障。

4. 規範政府宏觀調控的法律。

中國的市場經濟是實行宏觀調控的市場經濟。規範政府宏觀調控的法律是規定國家從社會的整體利益出發，以間接的宏觀調控措施，保證國民經濟穩定協調發展的法律。它既要規範政府宏觀調控行為的範圍，內容和手段，又要保障政府宏觀調控行為目的的實現。目前中國在這方面的法律主要有：

(1) 豫算法。

國家豫算是政府以年度財政收支計劃的形式，對依法征集的部分國民收入進行集中統一分配的活動，這是政府實行宏觀調控的主要手段之一。1995年1月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豫算法〉，是規定豫算的編制，審議通過和執行的法律。該部法律規定了中央和地方豫算的管理職權，豫算收支範圍，豫算的編制，審查，批准，執行，調整以及決算，監督和相應的法律責任。這對於保障中央和地方做到依法理財，依法治財，實現政府對經濟發展的宏觀調控，有着非常重要的作用。

(2) 中央銀行法。

1995年7月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中國人民銀行法〉，是規定中央銀行的地位，組織，職責，加強對金融業進行監督管理的法律。這部法律規定了，中國人民銀行是中華人民共和國的中央銀行；賦予了中國人民銀行以制定和執行貨幣政策，發行人民幣，管理人民幣流通，審批，管理金融機構，監督管理金融市場等多項職權。這就使中國人民銀行作為中國的中央銀行，得以依法運用控制貨幣發行量，收放銀根，調節利率和貼現率的辦法，維護金融秩序，保障市場經濟沿着健康、高效方向發展。

(3) 稅法。

稅收是國家財政收入的最主要來源，也是政府宏觀調控經濟的最有效，最直接的手段。而國家稅收必須依法征得。改革開放以來，中國稅收法建設取得了一定成績，制定頒行了一批法律，如：1992年9月中國人大常委會七屆二十七次會議通過的〈中

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1993年11月國務院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以及〈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暫行條例〉等，以保障國家稅收的實現。

(4) 價格法.

在市場經濟中，價格是市場上最靈敏的信號，它對經濟的調節功能是極為重要的。1998年5月施行的〈中華人民共和國價格法〉，是規範價格行爲，規定價格管理機關職責的法律。它規定了經營者的價格行爲，政府的定價行爲，價格總水平調控，價格監督檢查和法律責任等，有力地保障了發揮價格合理配置資源的作用，穩定市場價格總水平，保護消費者和經營者的合法權益，以促進市場經濟健康發展。

5. 規範勞動和社會保障的法律.

發展市場經濟與維護社會安定，二者是相輔相成的。歷史經驗表明，要維護社會安定，就必須以法律的形式規範和保障社會賴以存在的基礎，即勞動者的勞動權和其他相關的權利。中國在這方面的法律規定主要是：

(1) 勞動法.

1995年1月實施的〈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是規範和保障勞動者的合法權益，調整勞動者與用人單位之間勞動關係和與勞動關係密切聯繫的其他社會關係的法律。這部法律規範了促進就業，勞動合同，工作時間和休息休假，工資，勞動安全衛生，女職工和未成年工特殊保護，職業培訓，勞動爭議等一系列問題。它對於保障勞動者切身利益的實現，從而維護社會的安定，促進市場經濟發展和社會進步，有着十分重要的作用。

(2) 社會保障法.

這是規定國家對公民在其發生特殊困難時，給予一定物質幫助的法律。在中國，計劃經濟體制下的社會保障制度，對保證公民的基本生活和社會穩定起了重要的作用。但是，隨着改革開放的深入進行，這種帶有濃厚的計劃經濟體制色彩的社會保障制度，不僅已經不能適應新形勢的要求，而且走到了步履蹣跚，難以爲繼的地步。爲適應市場經濟的需要，充分發揮社會保障制度所具有的特殊的“減震器”和“安全網”的作用，中國對已有的社會保障制度進行了改革，加快社會保障立法的步伐。

當前，中國社會保障改革的作法是，實行社會統籌和個人帳戶相結合的養老，醫療保險制度，完善失業保險和社會救濟制度，為公民提供最基本的社會保障。為規範和引導社會保障制度的改革，國務院頒布了〈關於企業職工養老保險改革的決定〉，〈關於建立統一的企業職工基本養老保險制度的決定〉和〈失業保險條例〉等法規。有關部委發布了〈關於職工工傷保險試行辦法〉等規章。這些法規和規章有利地推動和保障了社會保障制度改革的順利進行。

四．市場經濟法律制度的完善

筆者認為，中國雖然初步建立了市場經濟法律制度，對中國市場經濟體制的建立和市場經濟的發展起了規範，引導，推動和保障作用。但是，目前中國的市場經濟法律制度還遠不能完全適應市場經濟發展的需要，依然存在一些問題。主要是：

(1) 有些法律具有轉制特點。

中國的市場經濟是在否定計劃經濟的基礎上逐步建立的。這反映在法律上，中國現行有關方面的法律，其一些內容帶有計劃經濟體制的痕迹，具有由計劃經濟體制向市場經濟體制轉軌的特點。在這方面較為突出的是，中國現行有關企業方面的法律，表現為兩種立法模式同時並存的局面。既有計劃經濟體制下按所有制形式的立法，如：〈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中華人民共和國城鎮集體所有制企業法〉以及〈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等。又有市場經濟體制下按企業組織形式的立法，如前面已提到的〈公司法〉，〈合伙企業法〉和〈獨資企業法〉等。這種立法狀況，不僅給企業適用法律帶來困難，而且按所有制形式的企業立法模式，也不適應市場經濟的要求。

(2) 一些相關的法律不協調。

中國建立經濟體制改革是自上而下，漸進進行的，與之相適應的法律，也是隨着改革進程的深入，逐步制定的，不可避免地會出現相關法律不協調的情況。〈公司法〉與〈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以下簡稱〈三資企業法〉)之間就存在不協調情況。〈公司法〉第18條規定：“外商投資的有限責任公司適用本法，有關中外合資經營企業，中外合作經營企業，外資企業的法律另有規定的，適用其規定。”按照這條規定，外

商投資的有限公司在適用法律時，優先適用〈三資企業法〉，〈三資企業法〉無規定的，適用〈公司法〉。而〈公司法〉和〈三資企業法〉對同一問題却規定不同。比如：關於有限公司股東會是公司的權力機關，董事會是公司的業務執行機關，監事會是公司的監督機關，而〈三資企業法〉則規定，外商投資有限公司不設股東會和監事會，董事會是公司的權力機關。這種相關法律的不協調，立法上的雙軌制，導致了中資有限公司與外資有限公司法律規範的不一致。

(3) 規範市場秩序立法欠缺。

從一定意義上講，市場經濟就是競爭經濟。要使市場經濟健康發展，必須要有健全、完備的創造競爭環境，維護市場秩序的法律。中國雖于1993年底實施了〈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當競爭法〉，對制止不正當競爭行為，創造公平競爭的良好環境起了積極的作用。但至今還沒有制定反壟斷法，致使限制競爭的行為沒能得到有效制止。在中國限制競爭行為不僅表現為，制定限制競爭協議，濫用市場優勢等經濟壟斷，而且表現為地方封鎖，部門分割為主要形態的政府和政府部門濫用行政權限制競爭的行政壟斷。限止競爭行為的存在有礙于統一開放，競爭有序市場的建立，市場對資源配置的基礎性作用不能有效發揮。

(4) 規範政府經濟職能立法欠完善。

中國市場經濟的建立和發展，需要政府的組織與推動。但在市場經濟條件下，政府對經濟的管理必須依法進行。在這方面，中國已經頒行了一些法律，但本人認為這類法律還是相當缺乏的。例如：中國的行政組織立法就不完善，對政府經濟職能的規範過于原則簡單，缺乏可操作性。首先，現行的〈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組織法〉內容過于簡單，全文僅11條。其中涉及國務院職能的規定僅1條，只規定了“國務院行使憲法第89條規定的職權。”〈中國憲法〉第89條中對國務院經濟職能的規定僅1條，即“領導和管理經濟工作和城鄉建設。”其次，國務院的組織部門，除中國人民銀行，審計署和監察部的組織和職權，由相關法律作出規定外，包括對外貿易經濟合作部，國家經濟貿易委員會，國家工商行政管理局等其他部門的任務，職責等是由國務院的行政文件予以規定的，缺乏規範性，穩定性和權威性。最後，現行的〈中華人民共和國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和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採取的是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組織法與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合二而一的立法形式，內容龐雜。上述現行行政組織立法狀況，不利于政府依法行使經濟職能。

當今時代，世界大多數國家都實行市場經濟，市場經濟的本質特征之一，在於它的開放性和國際性，中國的市場經濟當然也不例外。中國的市場經濟是開放性經濟，中國要使國內市場與國際市場接軌，就必須加快改革開放的步伐，大膽吸收和借鑑世界各國特別是發達國家的一切反映現代社會化生產和商品經濟一般規律的先進經營方式和管理方法，加快市場經濟的發展。與之相適應的，中國還必須盡快建立起健全、完善的符合市場經濟共同規律，適合中國國情的市場經濟法律制度，形成一個穩定、統一與世界相通的法律環境，不分中國人還是外國人，同等待遇，一律適用。以使中國經濟更好地與國際市場接軌，走向世界。

我們深深懂得，建立起健全、完全的市場經濟法律制度，對中國來說是一個新課題。僅靠我們自己改革開放以來所積累的經驗是遠遠不夠的，還必須大膽借鑑和吸收國外成功的立法經驗。這是因為，中國所要制定的有關市場經濟的法律，本質上是市場交易的規則，這些規則背後起作用的是市場經濟共同的。不僅如此，國外成功的經驗是由有幾十年甚至一二百年市場經濟歷史的國家，特別是其中的發達國家，通過對市場經濟的運行機制，發展規律及其法律調整進行長期的實踐，探索，研究，總結而取得的，具有普遍性的適用價值，是全人類法律文化不斷進步，法律制度不斷發展的珍貴結晶，是全世界市場經濟國家的共同財富。這就決定了中國完全可以，而且必須將其引進國門，以補我所缺，為我所用。因此，近年來的中國市場經濟立法，對國內法律中已有的反映市場經濟共同規律的法律概念，法律原則和法律制度，各國成功的立法經驗和判例，學說都大膽吸收和借鑑。這在去年頒行的〈新合同法〉中體現的最為明顯。

隨着21世紀的到來，各國市場的開放在加快，信息產業在非速發展，新的交易方式在不斷出現，這無疑加快了全球經濟一體化的進程。作為發展中國家的中國，即將加入世界貿易組織，這就使中國的市場經濟更加融入到國際經濟之中。中國的市場經濟立法也必然要與國際接軌，中國市場經濟法律中的許多原則，制度以至具體規範等，都必須與國際社會通行的規則，慣例中的相應內容彼此協調，甚至一致。面對21世紀國際經濟的新發展，根據加入世界貿易組織的要求，為加快中國市場經濟的發展，筆者認為，中國當前應當抓緊制定和完善的有關市場經濟方面的法律，主要有：

(1) 清理企業前置審批，創造寬松的法律環境。

企業前置審批是中國在由計劃經濟向市場經濟轉換的特定歷史時期實行的一種特殊制度。這種制度在改革開放初期，對分別限制，鼓勵和放開一些企業，建立和維

護市場秩序起到了積極的作用。但是隨着各級主管部門的層層加碼，形成企業前置審批過多過濫，嚴重影響了企業設立工作的正常開展。根據市場開放原則，中國國家工商行政管理局，按照國務院領導的批示，組織力量，對企業前置審批進行了清理。即查閱600多件法律，法規和文件，弄清具有法律限制的行業與項目37項；行政法規限制的行為或項目50項，國務院和國務院辦公廳發文限制的行業或項目30項，國家工商行政管理局或與其他部門聯合發文規定的企業前置審批行業和項目有36項，以上共計153項。在中國有些地方的企業前置審批行業與項目達400多項。目前，國家工商管理局已將清理結果上報國務院，請立法機關進行嚴格篩選，僅對必須的予以保留，使企業有個寬松的法律環境。¹⁾

(2) 制定物權法，明晰財產歸屬關係。

前面已述及，中國改革開放以來，逐步建立起物權法律制度。但〈民法通則〉中對物權的規定過於簡單，缺乏規範財產歸屬關係的基本規律規則，急待完善。1994年中國立法機關將制定物權法列入了立法規劃，但因種種原因遲遲沒有着手起草。1998年3月立法機關委託江平、梁慧星等9人成立民法起草工作小組，負責中國民法典的編纂和物權法草案的準備工作。該小組委託梁慧星起草物權法草案，1999年10月梁慧星領導的中國物權法研究課題組向立法機關提交了中國物權法草案建議稿。該建議稿12章共435條，對所有權；用益物權包括基地使用權，農地使用權，鄰地利用權，典權；擔保物權包括抵押權，質權，留置權等物權作了詳細規定。²⁾物權法草案建議稿進行認真研究，並盡快按照〈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的規定，制定物權法，以規範財產歸屬關係，保障財產歸屬秩序，更好地適應市場經濟的需要。

(3) 制定反壟斷法和反傾銷法，維護公平競爭的市場秩序。

反壟斷法是禁止壟斷和其他限制競爭行為的法律。由於壟斷造成市場結構不合理，導致競爭機制失效，所以實行市場經濟的國家大都制定有反壟斷行為的法律。作為正在建立和完善市場經濟體制的中國，也需要加快制定反壟斷法。我主張，中國制定的反壟斷法不僅應切合中國實際，通過一系列規定，禁止通過協議，濫用優勢，過渡合併導致限制競爭的經濟壟斷；禁止政府和政府部門濫用行政權限制競爭的行

1) 參見，李必達：〈我國企業登記工作為加入世貿組織所作的準備及其差距〉，《中國工商管理研究》，2000年，第7期。

2) 參見：中國物權法研究課題組：〈中國物權法草案建議稿〉，社科文獻出版社，2000年3月出版。

政壟斷。而且還應通過一系列規定，禁止嚴重影響市場競爭的國際特許；限制跨國公司在中國的外部擴張；禁止跨國公司在中國濫用市場支配地位等，以建立公平競爭的市場競爭秩序。

反傾銷法是關於規定反傾銷標準，反傾銷措施，掃除傾銷損害的法律。傾銷行為實際上是一種不正當競爭行為。一些國家向中國傾銷產品，如新聞紙，1997年國際市場的正常價格為550美元/t，而進入中國市場的則為480美元/t。相反，在國際市場上，一些國家對中國產品的反傾銷範圍則呈現出不斷擴大的趨勢，如靴，打火機，鉛筆等就會被訴傾銷而課以重稅。目前，中國有關反傾銷方面的法律，僅是1997年頒行的〈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反補貼條例〉(以下簡稱〈反傾銷條例〉)。為維護對外貿易秩序和公平競爭，中國應當在〈反傾銷條例〉基礎上，制定一部反傾銷法，以反對外國以低於公平價值的價格在中國傾銷商品，維護中國的民族工業和保護產品在國際市場上進行競爭。

(4) 修改〈公司法〉，完善公司制度。

中國的〈公司法〉自1994年7月實施5年多來，對規範公司的組織和行為，保護公司，股東和債權人的合法權益，維護社會經濟秩序，促進市場經濟發展，發揮了重要作用。但中國的公司立法還不完善存在一些問題主要有三：一是〈公司法〉與相關法律的協調問題。二是與〈公司法〉自身存在的問題。就〈公司法〉自身存在問題而言，其一，象公司注冊資本最低限額及股東出資繳納規定等規定過嚴；其二，關於公司合併等的規定比較原則不易操作；其三如公司治理結構等不少問題的規定欠完善。為完善〈公司法〉1999年12月中國人大常委會九屆十三次會議通過了關於修改〈公司法〉的決定。這是〈公司法〉自實施以來，對其進行的首次修改。但這次修改只是針對當前中國個別急需的實際問題，對〈公司法〉有關條文進行的修改，即明確規定對國有獨資公司實行外派監事會制度；放寬對高新技術股份有限公司以工業產權和非專利技術作價出資額占公司注冊資本的比例，以及發行新股及申請股票上市的條件。筆者認為，為適應市場經濟的需要，完善中國的公司制度，應對中國〈公司法〉進行全面修改。〈公司法〉的修改，首先應當本着中資公司與外資公司一律全部適用的原則。其次，由於公司制度是人類的共同財富，因此，中國〈公司法〉的修改既要結合中國的實際，又要大膽吸收和借鑑國外公司立法的經驗，如引進授權資本制度，公司設立無效制度，獨立董事制度，小股東保護和公司債權人保護制度等等。使修改後的中國〈公司法〉，成為一部既符合中國實際又與國際接軌的現代化公司法。

(5) 完善金融方面的法律，適應金融市場全球化的需要。

隨着中國即將加入世界貿易組織，中國的金融市場將逐步加入全球金融市場一體化的行列，外國金融機構將逐步進入中國金融市場，開展各項金融業務。對此，中國目前正在醞釀的措施是，將允許外資銀行，外資保險公司同中資公司一起進入部分流通領域；將建立中外合作投資基金形式；試行允許中外合資企業和外資企業在中國國內市場上市；向合格的外國投資者有限度地開放中國國內股票市場等。

中國金融市場的開放，中國金融行業的企業將面臨前所未有的競爭和挑戰。這需要我們盡快加快經濟體制改革的步伐，建立現代企業制度，使中國金融企業在與外資企業的競爭中求生存，求發展。中國金融市場的開放，就意味着必須要按照國際慣例進行運作。與之相適應的有關銀行，保險，證券等金融方面的法律，在內容上應當符合市場經濟運行規律，逐步與〈服務貿易總協定〉，相銜接。為推動中國目前正在醞釀的逐步開放金融市場措施的實施，為使中國金融方面的法律逐步向〈服務貿易總協定〉靠攏，必須對中國現行的商業銀行法，保險法和證券法等相關法律進行修改和完善，使之符合國際慣例和市場經濟的要求。同時，還要加快制定〈投資基金法〉和〈期貨法〉等法律，逐漸使中國金融方面的法律健全和完善。

此外，電子商務，稅收以及社會保障等有關市場經濟方面的法律，中國也應盡快制定，修改和完善，以保護交易安全和消費者權益，實現中資，外資企業所得稅統一，保障公民基本生活。總之，健全，完善市場經濟法律制度，對中國來說，是一項繁重而艱巨的任務。但是，我們有改革開放20年來市場經濟體制改革和市場經濟法制建設的經驗和教訓：有包括日本，韓國在內的發達國家市場經濟運行機制和法制建設方面的成功的經驗供我們借鑑。我堅信，經過我們的繼續努力，到21世紀中國的市場經濟會更加健康的發展，中國市場經濟法律制度將日趨健全和善，從而使中國走向繁榮富強。

中國의 市場經濟法律制度的 確立과 整備

譯: 文俊朝*

차 례

- I. 경제체제의 변혁
- II. 법률제도의 폐지·확립
- III.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
 - 1. 시장주체를 규율하는 법률
 - 2. 시장주체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 3.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법률
 - 4. 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규율하는 법률
 - 5. 노동과 사회보장을 규범화하는 법률
- IV. 시장경제법률제도의 완비

*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委員, 法學博士

중국경제법제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와 법제건설간에는 밀접한 내재적인 관련성이 있다. 강택민 주석은 사회주의법제건설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건설은 밀접불가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교적 완비된 사회주의법제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은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중국법률건설사상 전무한 창조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중국법률건설의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I. 경제체제의 변혁

경제체제개혁 이전의 30년동안, 중국이 실행한 것은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였다. 초기 및 제1차 5개년계획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전국의 재정경제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본주의商工業에 대하여 사회주의개조를 진행하고 계획에 따른 대규모경제건설의 막중한 임무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解放區(사회주의통치지역)의 전통적인 작업방법을 계승하고 舊소련의 경험을 차용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차츰 전국적으로 집중통일된 계획경제체제를 건설해 갔다.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지 아니하였고, 경제구조가 간단하였고 건설규모도 아직 작았으며, 발전목표 역시 單一하였다는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계획경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중국경제를 급속하게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차츰 100 여항의 공업골간공정을 일으켜 세웠으며, 역량집중으로 큰일을 처리하는 우수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구조의 복잡, 발전목표의 다원화추세 및 인민생활의 수요 증가와 국제경제연계성 증대 등등의 현상으로 인해, 고도로 집중적인 계획 안배와 행정지도를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경제체제의 폐단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점점 중국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되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첫째, 계획경제는 국유제를 추진 목표로 하여 생산관계면에서 “一大二公”을¹⁾ 강조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억제하

1) 인민공사 조직화의 주요방침을 말한다. 여기에서 ‘大’라 함은 공사(公社)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토지가 많아 대규모의 생산과 건설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公’이라 함은 사회주의화·집단소유화를 말한다. 翻譯者 注.

여 경제가 활기를 띠기 어렵게 하였다.

둘째, 사회자원배분면에서 생산요소의 유동성을 제한시켜서 자원이 저효율 부문으로부터 고효율부문으로 이동시키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장기적으로 형성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업구조·지역경제구조·기술구조·취업구조의 엄청난 균형상실을 수반하는 자원의 불합리한 분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 파괴와 낭비를 초래하였다.

셋째, 사회상품분배면에서 계획경제가 실행하는 것은 직공의 기업의 한술밥(大鍋飯) 먹기 그리고 기업의 국가의 한술밥 먹기라는 평등주의였기 때문에, 생산자와 경영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억제하였다.

넷째, 경제관리면에서, 국가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적·지령적·직접적 통제와 관리는 정치와 기업의 비분리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함으로써 고투입·저산출, 효율·이익의 불량이 기업내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게 됨에 따라 본래 생기발랄하여야 할 사회주의 경제가 대단히 클 정도로 그 활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속박하여 버렸던 것이다.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의 20년의 기간동안 중국 사회생산력은 큰 발전이 없었고, 인민군중의 물질문화생활조건도 당연히 있어야 할 정도의 개선을 얻어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78년 중국인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250달러에도 못미쳤고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은 인민폐 수십원에 불과하였으며, 농촌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빈곤상태에 처하여 있었고 그 중 1억 인구는 아직도 끼니를 이어가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 당은 경제체제개혁전의 국민경제발전의 느린 속도문제를 반추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三中全會는 당과 국가의 업무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할 것을 과단성 있게 제안하여, 개혁개방을 시행하는 위대한 정책을 내어놓았다. 이 회의 이후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에 따라 중국은 실제적으로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고도의 집중적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실행에 옮겨가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은 계획경제만이 사회주의이며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장애에 부딪쳤다. 전세계의 수백년 동안의 경제발전의 실천과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 30년의 경험교육은 두말할 여지 없이 다음과 같은 점을 증명하고 있다. 즉 시장이 사회자원배분에서 기초적 작용을 하는 시장경제는 현대화 대규모생산이라는 이상적 경제체

제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사상에서 해방되고 관념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소평은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979년부터 수차에 걸쳐 “시장경제는 오직 자본주의에서만 존재하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만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간에는 근본적인 모순은 없다”, “계획과 시장 모두 방법이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좋은 점이 있으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등소평의 수차례 講話가 부단히 추진되어 온 가운데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보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1984년 중국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는 상품경제는 사회경제발전의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이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상품경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대표대회에서는 계획상품경제체제가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1989년 중국공산당 제13기 4중전회 후에는 계획상품경제발전의 계획과 시장조절이 상호 결합된 경제체제와 운용메커니즘을 확립·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1992년초, 南方 講話중 등소평은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와 대등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대등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도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것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사회근본제도범주에 속하는 사상의 굴레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가 시장경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장기적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장애가 되어왔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등소평의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련의 논거에 근거하여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정하였다.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若干問題的決定：중국공산당 중앙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였다. 이 규정은 20세기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법률체계를 초보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과거 경제체제로부터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실현한 것이며 사회생산력의 행동강령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

들은 결국, 우리 나라 현대화 건설의 중대한 이론문제와 실천문제에까지 관련 되는 구체적인 경제체제의 선택문제를 철저히 해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시장경제는 시장이 자원분배중에 기초적인 작용을 하는 경제이다. 시장경제는 대체적으로 각국의 사회제도와 구체적인 역사조건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중국이 실행하는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주의의 사회제도와 하나로 결합되어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설립되어 다종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한다는 기초위에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공유제 경제는 국유경제와 집체경제 및 혼합소유제경제중의 국유 구성부분과 집체 구성부분을 포함하며,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의 요체는 현재 다음과 같다. 공유자산은 사회 전체자산중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경제는 국민경제의 명맥(중요한 일, 생명)을 통제하여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므로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조건하에 다종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따라서, 개체와 사영기업 등 비공유제경제는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이들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둘째,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에서 공유제는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동시에 분배제도면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를 위주로 하고 기타 분배방식을 보충으로 하여 시행하며 효율과 공평의 원칙이 겸비되도록 한다. 그 밖에, 국가는 점차 사회정책과 조절수단을 통하여 앞서가는 것을 장려하고 효율을 촉진하며 수지 초과분의 유보를 허용하면서도 수지초과분 유보의 확대를 방지하여 양극분화를 형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주의전체의 구성원의 공동부유를 실현한다.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가 상술한 독자적이고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계획경제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중국의 사회시장경제는 상품경제이며 교환을 직접 생산목적과 연계방식으로 하는 경제형태이다. 시장내용을 구성하는 경제관계는 계획분배와 무상조달 관계가 아니며 상품교환의 연계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시장경제로서 모든 시장경제의 공통되는 특성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첫째, 자주성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주체는 법에 따라 충분히 의사적 자유를 향유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그들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평등성이다. 시장주체의 법률적 지위는 모두 평등하며 그들간에는 등급의 고하의 구별이 없다. 어떠한 자도 모두 타인보다 우월한 특권을 갖지 아니한다.

셋째, 등가유상성이다. 상품교환은 대가, 유상이어야 하며 무상으로 타인의 노동을 차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넷째, 성실신용성이다. 성실신용은 시장경제활동의 도덕표준이다. 성실신용은 시장주체가 모든 교역을 할 때 반드시 성실하게 행동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이익과 손해의 자기부담성이다. 시장주체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익은 법률의 질실한 보호를 받는다. 동시에 교역의 책임, 교역의 위험도 자신이 부담한다.

여섯째, 공정경쟁성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해, 시장경제는 바로 優生劣汰의 경쟁경제이다. 모든 경제주체는 모두 평등한 자격으로 평등의 기초하에 법에 따라 경쟁을 진행한다.

II. 법률제도의 폐지·확립

경험은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경제제도의 수립과 운용도 모두 보장과 지원을 하는 상응하는 일정한 형식의 규칙과 수단을 필요로 함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며, 시장경제의 객관적 규율을 반영하는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경제이다. 이것은 시장내용을 구성하는 상품교환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시장관계, 예컨대, 상품매매관계라 할지라도 일련의 불문 또는 성문의 법률규칙에 기초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의 법률의존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도 법률의 규율, 인도, 제약과 보장을 필요로 하며 엄격히 법률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중국사회주의의 시장경제와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의 시장경제가 형성한 경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자연적으로 그러나 한 걸음 한걸음 형성된 것이며 그것이 걸어온 길의 역사는 수백년동안의

기나긴 경로였다.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의 과정은 이와는 다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아니라 정해진 바 없는 다년간 시행된 계획경제를 부정하는 기초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수립된 것이다. 이 말은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거쳐 계획경제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의 개혁방식을 확정해야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반드시 領導를 필요로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체제개혁의 실천도 역시 사회주의시장경제법제도를 질실하게 요구한다.

법률은 상부구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며 일정한 경제기초위에 건설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러한 기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상부구조가 되는 법률은 또한 경제기초의 중개를 통하여 생산력에 반응을 하게 된다. 법률의 경제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바로 사람의 의식 있는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법률이 시장경제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사람들이 시장경제와 상호 조화하지 못하는 과거의 법률이론과 관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장경제법률제도는 확립될 수 없게 된다. 두 말할 여지없이, 중국의 법률이론은 건국초기에는 구 소련의 법률이론의 기초위에 형성된 것이며 개혁개방전의 오랜 기간동안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의 본질적 특징과 요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므로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없는 과거의 법률이론과 관념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국가의 두 종류의 지위의 합일이론

구 소련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과거 법률이론은 공권력으로 작용하는 국가와 소유권자로 작용하는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의 이 두 가지 지위의 합일을 강조하고 있다. 구 이론인 사회주의국가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모든 국가권력을 소유권자의 권력과 결합시켜 자기수중에 장악하는 것에 있으며 또한 국가권력과 소유권자의 모든 권력이 밀접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바로 “정부와 기업의 비구분”(政企不分)이라는 구체제의 근본적인 특징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는 방대

한, 거의 무소불위의 경제직능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는 공권력이자 재산소유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직접 경제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조건하에서는 국가는 제한적인 경제직능만을 가질 뿐이었다. 세계대전후 시행되고 있는 케인즈 경제정책의 시장경제조건하에서는 국가는 막중한 경제직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자유방임주의를 시행하는 범위에서의 경제정책에의 관여이며 국가의 공권력자로서의 지위와 재산소유자로서의 지위는 엄격히 구분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시장경제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의 두가지 지위합일을 주장하는 구법률이론을 포기하여야 했으며, 공권력으로서의 국가와 재산소유권자로서의 국가를 구분함으로써 국가가 전인민소유제 재산소유권자 지위로서 진행되는 경제활동은 더 이상 국가경제직능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국가가 갖는 경제적 직능은 국가공력권에 근거하여 시장경제에 대해 진행하는 적당한 수준의 관여에 한정시키고 마땅히 가져야 할 시장에 대한 관리와 객관적인 거시적 경제직능의 행사에만 주력하도록 하여야 비로소 시장경제본질의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2) 국유기업경영권이론

이 이론은 20세기 40년대 구 소련 민법학자 웨이니지크타브가 제시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국유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향유하며 국유기업은 경영권을 가질 뿐이다. 그 물질적 기초는 소련의 고도의 집중적인 계획경제체제였다. 국유기업경영권이론은 중국에 계수되어 중국법률이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법률이론의 근본적인 결함은 정부와 기업의 합일에 있으며 국유기업이 행정기구의 부속물이 되도록 하여 구체제하에서 국가는 직접 행정수단을 통하여 경제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이 법률이론은 반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점점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국유기업경영권을 과감히 포기하여 국유기업이 기업법인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만이 기업제도의 개혁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어 국유기업이 진정한 시장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구 소련의 경제법이론

이것은 20세기 50년대 말 60년대 초 형성된 것으로 구소련의 현대경제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라프지에브가 제시한 경제법이론이다. 라프지에브의 경제이론은 70년대말 중국에 도입되어 중국경제법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경제이론은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계획경제체제의 합리성을 천명하는 주장이었다. 그것은 “계획조직요소와 재산요소”의 결합을 강조하고 “횡적 경제관계와 종적경제관계”의 불가분적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기업을 “경제기관”으로 보아 경제관계의 상품성을 부인하였다는 데 그 해악이 있었다. 이 이론의 실질은 행정권력을 행사하여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경제제도이며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체제개혁의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되며 우리가 확립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상호 저촉된다. 이 이론을 버려야 사람들의 사상은 해방될 수 있고 경제법학도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합되는 경제법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제도에 의존가능한 과학적 법리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사람들의 머리속의 구 이론과 관념을 깨끗이 제거함과 동시에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형성된 법률제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시장경제체제의 필요에 적당하지 못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정과 폐지를 진행하고 시장경제체제의 필요에 정당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1)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시장경제개통도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법률의 개폐

중국경제체제개혁이 직면한 장애중의 하나는 계획경제의 구체제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존의 법률들이다. 이 때문에 개혁은 법령을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개폐가 지체되면 개혁도 진전을 보기 어렵게 된다. 중국의 전체적인 법률체계중의 대부분의 법률은 중국공산당 14대에서 제출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前에 제정된 것들이어서 계획경제체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당부분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이 정한 절차를 통

해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필요에 부적합한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해야 경제체제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개혁이 견실한 법제의 기반위에 서게 되고 법률 상호간의 저촉이라는 곤경에 빠지지 아니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근본대법인 〈中華人民共和國憲法〉(이하 “中國憲法”이라 한다)이 경제체제개혁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시장경제체제에 부적당한 조항들을 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1982년 중국헌법 제15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의 기초하에 계획경제를 실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만약 이 조항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개혁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1993년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국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중요한 개정내용은 앞서 언급한 조항을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시행한다”라고 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보장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 1994년 5월 중국 국무원은 〈關於廢止1993年低以前廢布的部分行政法規的決定：1993년말이전에 제정된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에 관한 결정〉을 작성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에 부적당한 〈關於燃料電力保證定量供應辦法：연료전력빙증정량공급에 관한 판법〉, 〈關於人造板分配的暫行辦法：인조목재분배에 관한 잠정판법〉 등 21개 행정법규를 폐지하여 시장경제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길을 열었다.

(2)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시장경제체제진행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공포

중국의 개혁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광활하고 발전수준이 불균형한 큰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혼란이 조성되고 불필요한 반복이 초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혁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중국의 개혁은 또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확립을 위한 개혁의 진행·심화는 반드시 제정·구현된 시장경제규율과 개혁절차를 반영한 법률에 따라 인도, 추진 및 촉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개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개혁개방 이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지금까지 법률 및 법률과 관련된 결정 375건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800여건이고, 각지방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7,000건이

며, 그 밖에도 국무원 각부문과 지방인민정부 역시 25,000여건의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 법률, 법규 및 규칙의 제정과 실시는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경제체제개혁과정중 국유기업개혁은 시종 쏠경제체제개혁의 중심이 되는 문제의 하나였다. 20여년동안 국유기업개혁의 모든 조치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대체적으로 다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이며 권리확대와 이익양여(擴權讓利)였다. 이것은 국유기업개혁의 초기 단계이며 주로 국유기업경영자주권을 확대하고 利改稅를 실행하는 것이며 이익을 국유기업에 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국유기업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였다. 예컨대, 〈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자주권확대에 관한 약간의 규정〉, 〈국영공업기업의 자주권의 진일보 확대에 관한 잠정규정〉 및 〈關於擴大國營工業企業利潤留成試行辦法：국영공업기업이윤유보에 관한 잠정판법〉 등이다.

두번째 단계는 1985년부터 1991년부터이며 여러 가지 경영방식과 양권(소유권과 경영권)분리원칙을 채용하였다. 이 단계는 국유기업의 활력증강을 위하여 주로 국유기업이 도급(承包), 임대 등 여러 가지 경영방식을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유기업재산에 대하여 양권분리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국유기업의 다양한 경영방식의 채용을 규율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全民所有制工業企業承包經營責任制暫行條例：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도급경영책임제잠정조례〉와 〈全民所有制小型工業企業租賃暫行條例：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소규모공업기업임대잠정조례〉를 공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중화인민공화국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은 국유기업재산의 양권(소유권과 경영권)분리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즉, 중국국유기업의 재산은 국가소유에 속하고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에 경영관리를 위탁하고, 국유기업은 국가가 그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을 점유, 사용 및 법에 의거한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세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이며 경영구조를 전환하여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이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경영 메커니즘전환조례>를 공포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을 현대기업으로 설립할 필요에 적응시키기 위해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국유기업을 현대기업으로 설립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유도과 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였다. 20년 이상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었다. 즉, 새로운 법률과 법규의 제정이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진하였고 국유기업의 관리체제와 경영 메커니즘에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여, 시장경제요구에 적응하는 목표에 빨리 적응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는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구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법률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보장작용은 주로 다음 두가지 면에서 구현된다.

첫번째는 경제체제개혁이 이미 획득한 성과를 법률형식으로 고정하여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영경제문제에 관하여 개혁개방전에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영경제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고, 1978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헌법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산요소 소유제는 현단계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즉,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와 사회주의 노동군중집체소유제이다”, “국가는 비농업분야의 개체노동자가 城鎮(도시와 읍) 또는 농촌의 기층조직의 통일적인 안배와 관리하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타인을 착취하지 아니하는 개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사회주의 집체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후에는 경제체제개혁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사영경제의 존재를 허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이 필요하여 이러한 개혁 성과를 법률형식으로 고정하기 위하여 1982년 이후 중국은 3차례에 걸쳐 중국헌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최근의 개정은 1999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헌법수정안이며 사영경제조항의 관련규정을 “법률규정의 범위내의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개정된 헌법에 기초하여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私營企業暫行條例 : 중국인민공화국사영기업잠정조례〉 및 〈中華人民共和國個人獨資企業法 : 중화인민공화국개인독자기업법〉을 공포함으로써 사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법률수단을 운용하여 각종 위법활동을 제재하고 모든 범죄행위를 소탕함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시행하는 것은 중국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양각색의 교란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강제력으로 실시되는 법률의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보장작용을 보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방면에서 특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중국 형법”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이다. 여기에서 중국 형법 제2편 각칙중의 제3장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한 죄”를 “사회주의시장질서를 파괴한 죄”로 개정하였다. 그 내용도 원래 15조만 있었으나, 개정하여 8절 89조가 되었으며 회사, 기업의 관리질서를 방해한 죄, 지적재산권침해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중국 형법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장이 더욱 완비되었다.

Ⅲ.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체제개혁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정비 는 필수적으로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주의시장발전의 필요에 부응한 법률제도가 있어야 한다. 근거법이 있어야 비로소 시장경제는 질서 있게 운용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시장주체, 시장질서, 정부의 거시적인 통제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용환경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큰 체계이고 그 자체가 미치는 사회관계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상황도 대단히 복잡하므로 규범과 시장경제질서보장을 통하여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그 자체도 내용과 질서형식이 완비된 통일적인 유기체계로 구성되는 일정

한 숫자와 조합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로 20여년간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시장경제진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여러 종류의 성질이 다르고 작용도 같지 아니한 법률부분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집합체에는 주로 헌법 및 민법, 상법, 경제법, 사회법, 행정법, 형법 등 법률부분의 법률을 포함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을 시장경제에 각기 다른 방면의 규범·보장작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는 주로 다음 5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 시장주체를 규율하는 법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주체의 자격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시장주체는 주로 기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기업에 관한 입법은 시장주체관련입법이다.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업조직형태에 따른 입법모델을 채용하였는데 시장주체를 건전하게 하는 관련입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회사법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公司法)”이라 한다)은 새로운 중국의 회사법이며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및 대내외적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회사는 통상적으로 회사법에 따라 중국 국경내에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사는 현대기업의 전형적인 조직형태이며 중요한 시장주체이다. 회사법은 중국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라 함은 출자자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자산 전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주식회사는 그 자산전부가 等價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소유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책임을 지되, 회사는 그 자산전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그 밖에 회사법은 중국의 현실적인 특징을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유한책임회사중 국유독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규정을 두어 현재의 국유기업이 회사로 개조될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2) 合伙企業法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合伙企業法〉은 合伙企業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및 대내외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合伙企業이라 함은 合伙企業法에 의하면 중국국경내에 설립된 각각의 동업자가 合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출자하고, 공동경영하여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合伙企業債務에 대해서는 무한의 연대책임을 지는 영리적 조직을 말한다.

(3) 獨資企業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個人獨資企業法〉(이하 “독자기업법”이라 한다)은 개인독자기업의 설립, 운영, 終止 및 대내외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개인독자기업이라 함은 독자기업법에 의하면 중국국경내에 설립되고 1인의 자연인이 투자하여 재산은 투자자의 소유이며 투자자가 그 재산전부로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영리적 조직을 말한다.

2. 시장주체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시장경제에서, 시장주체는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주체행위의 자주성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시장주체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주체의 행위는 다음 두가지 방향을 지향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첫째는 권리행사이고 둘째는 의무이행이다. 그중 권리행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시장주체가 영리적 목적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형식이다. 의무이행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며 시장주체가 영리목적을 실현하는 조건이자 보증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중 시장주체행위를 규범화한 법률도 시장주체의 각 부분의 권리와 그 본질적 내용의 실현을 규범화하고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방면에서의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物權법

물권법은 통상적으로 공민, 법인, 비법인단체가 직접 통제하고 지배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시장주체가 보유하

는 자신의 재산은 상품교환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물권법은 시장경제를 발휘하는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한 걸음 한 걸음 물권법제도를 확립시켜왔다. 현재 물권과 관련된 법률규정은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이라 한다)과 기타 몇개의 단행법률속에 각기 포함되어 있다.

1986년 4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이며 주로 평등한 주체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 있는 재산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소유권을 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인민과 집체 소유의 재산 및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보호된다. 그와 동시에 경영권과 사용권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유권과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할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자신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해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국가소유의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전민소유제 단위 또는 집체소유제 단위가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집체가 소유하는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집체가 사용하는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집체가 경영을 도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도급경영권을 보호한다. 넷째, 국가소유의 광산은 법에 의거하여 전인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가 개발채취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공민도 채취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합법적인 채광권을 보호한다.

(2) 계약법

계약법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시킨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계약법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시장경제는 바로 계약경제이며 시장경제는 바로 자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많은 주체간에 계약관계가 부단히 발생하고 채무는 부단히 이행되고 채권은 부단히 실현되는 과정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계약관계가 없다면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보장하는 계약법은 있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시장경제도 없게 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1981년과 1987년 계속하여 〈中華人民共和國經濟合同法 :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과

〈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및 〈中華人民共和國技術合同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이 3가지 계약법은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체제개혁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병존하는 이들 3 계약법들은 계획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구 법률의 이론적인 내용을 반영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이한 계약관계를 따로 따로 규율함으로써 상호간에 협조와 일치가 결여되었다. 계약법의 통일화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하 “신계약법(新合同法)”)이라 한다)이 통과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계약법은 3개의 계약법이 병존하는 상황을 없애 거래규칙의 통일화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 계약자유원칙, 공평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체결, 효력, 이행 및 위약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매매, 차관, 용자, 임대 등 15종의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됴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시장경제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제도를 규정하고 어음·수표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중국경제체제개혁이후, 어음수표제도는 차츰 회복되어 어음수표는 지불, 환어음, 신용, 상계채무 및 용자 등의 면에서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여왔다.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中華人民共和國票據法: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은 사람들이 날로 발전하는 거래중에서 더욱 빈번하게 더욱 훌륭하게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가 가져야 할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4) 증권법

증권법은 증권발행, 거래 및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중국은 일찍이 1950년대에 국채를 발행하였고, 1980년대초 일

부 기업들이 주식과 기업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으며 1990년대초에는 증권발행시장과 증권거래시장이 이미 전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중국의 증권거래에 관한 입법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점보다 늦어졌음은 분명하다. 199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증권거래는 주로 〈회사법〉중의 주식, 회사채권의 발행·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였다. 〈股票發行與交易管理暫行條例：주식발행·거래관리 잠정조례〉 등 행정법규, 〈證券交易所管理辦法：증권거래소관리판법〉 등 행정규칙 및 증권감독위원회가 공포한 규범성 문건에 따라 운용되었다.

입법지체 국면을 타개하여 더욱 원활히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증권발행·거래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證券法：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이 통과되어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증권의 발행, 거래 및 감독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5) 보험법

보험법은 보험계약당사자 및 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아울러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199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은 보험총칙, 보험계약 및 보험업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규범을 통하여 상호부조의 형식으로 거래의 각종 위험, 신체위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완비된 보험제도로 기업과 개인이 특정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 또는 특정한 사고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당한 의존할만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안정과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3.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법률

시장경제법률체도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바로 시장질서를 규율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시장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평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며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며 소비자와 사회공공이익 불침해의 확대가 포함된다. 현재 중국의 시장질서부분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운용메커니즘이다. 199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當競爭法 :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른바 부정경쟁이라 함은 경영자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률은 경영자가 시장경쟁중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부정경쟁행위의 범위, 부정경쟁의 금지를 집행하는 기관 및 부정경쟁행위의 처벌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정경쟁의 장려·보호, 부정경쟁행위 억제, 경영자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보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하고 있다.

(2) 광고법

광고는 기업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다. 각종시장영역에서의 활발한 광고활동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완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 :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은 광고주, 광고업경영자, 광고발표자 등이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준칙과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광고행위의 규율, 광고의 건전한 발전 촉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사회경제질서 유지, 시장에서의 광고의 적극적인 작용 발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소비자권익보호법

시장경제조건하에서 그 일방은 현대화된 대회사, 대기업이며 이들은 강력한 경제적 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활동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일방인 대규모의 소비자들은 분산된 개체로 표출되므로 경제적 실력은 미약하여 시장활동에서 가장 쉽게 피해를 입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경제법률제도로 하여금 약자 보호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도록

를 요구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障法 :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 경영자의 의무, 국가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소비자단체, 경쟁의 해결과 법률책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하고 있다.

4. 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규율하는 법률

중국의 시장경제는 거시적 통제가 실시되는 시장경제이다. 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규범화하는 법률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간접적인 거시적 통제조치로서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증한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의 거시적 통제행위의 범위, 내용 및 수단을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 통제행위의 목적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중국의 현행법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예산법

국가예산은 정부가 연간재정수지계획의 형식으로 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국민의 일부 소득에 대하여 집중적인 통일분배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국가예산은 정부가 거시적 통제를 수행하는 주요수단중의 하나이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豫算法 :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은 예산의 편제, 심의통과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 관리권능, 예산수지범위, 예산의 편제, 심사, 승인, 집행, 조정 및 결산, 감독과 상응하는 법률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앙과 지방의 依法 재정관리, 依法 재정처리의 보장 및 정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거시적 통제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2) 중앙은행법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中國人民銀行法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지위, 조직 및 권능·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중국인민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임을 규정하고, 중국인민은행에 화폐정책의

수립·집행, 인민폐발행, 인민폐유통의 관리, 심사승인, 금융기관의 관리 금융시장의 관리감독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국인민은행으로 하여금 중국의 중앙은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화폐발행고의 통제·은행자금환수방출, 이자율과 어음할인율 조정의 방법을 법률에 따라 운용하여,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세법

세수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주된 원천이며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통제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세수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세수 관련법 정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바, 몇 가지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예컨대, 1992년 9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7차 회의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 :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1993년 11월 국무원이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 :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정조례〉 및 〈中華人民共和國所得稅暫行條例 :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정조례〉등으로 국가의 징세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4) 가격법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가장 민감한 신호가 되며 가격의 경제조정에 대한 기능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199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價格法 :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은 가격책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가격관리기구의 권능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영자의 가격책정행위, 정부의 가격결정행위, 물가수준조정, 가격감독조사와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가격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작용의 발휘, 시장물가의 안정화,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강력하게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5. 노동과 사회보장을 규범화하는 법률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안정의 유지,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상호보완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 것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볼 때, 사회

안정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형식으로 사회가 의존할 존재의 기초, 즉,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타 관련 권리를 규범화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의 이 분야의 법률규정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노동법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취업의 촉진, 노동계약, 노동시간 및 휴식·휴가, 임금, 노동 안전위생, 여성노동자와 미성년노동자의 특별보호, 직업훈련, 노동쟁의 등 일련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노동자의 절실한 이익의 실현을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는 데 대해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2) 사회보장법

이 법률은 국가가 공민에 대해 당해 공민에게 특수한 곤란이 발생한 때 일정한 물질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획경제체제하의 사회보장제도는 공민의 기본생활과 사회안정을 보증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심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농후한 계획경제체제의 색채를 가진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적당하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행보가 비틀거리게 되어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경제의 필요에 적응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특수한 충격완화장치와 안전망으로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여 사회보장입법의 행보를 가속화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사회보장개혁의 접근방법은 사회 전반적 계획수립·배려(統籌)와 개인의 계좌(에서의 지출)가 상호결합된 양로 및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사회구제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공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규율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關於企業職工養老保險改革的決定 : 기업근로자양로 보험개혁에관한결정〉, 〈關於建立統一的企業職工基本養老保險制度的決定 : 통일적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확립에관한결정〉 및 〈失業保險條例 : 실업보험

조례〉 등의 법규를 제정하였다. 관련부처와 위원회에서도 〈關於職工工傷保險試行辦法：근로자의업무상재해보험시행관법〉 등의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령과 규칙은 사회보장제도의 순조로운 진행을 추진하고 보장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

IV. 시장경제법률제도의 완비

필자는 중국이 비록 초보적으로 시장경제법률제도를 확립하였을 뿐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규율·유도·추진·보장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시장경제발전의 필요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제전환의 특징을 가진 일부 법률

중국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를 부정하는 토대위에서 단계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이 점이 법률에 반영되어 중국의 현행 관련분야의 법령은 그 일부 내용이 계획경제체제의 잔재를 포함한 채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면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것이 중국의 현행 기업관련법률들이며 상기의 두 가지 입법형식(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는 국면을 표현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의 소유제형식에 의거한 입법, 예컨대 〈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중화인민공화국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城鎮集體所有制企業法：중화인민공화국城鎮집체기업법〉 및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이 있는가 하면,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조직형식을 갖고 있는 입법, 예컨대 앞서 지적한 〈회사법〉, 〈합자기업법〉, 〈독자기업법〉등도 있다. 이러한 입법상황은 기업법률적용에 곤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유제 형식에 따른 기업입법모델은 시장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한다.

(2) 상호관련된 일부 법률들간의 부조화

중국의 경제체제확립개혁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률 역시 개혁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하나씩 하나

씩 제정된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관련 법률간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회사법〉과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 :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이상3가지 법률은 이하 “三資기업법”이라 한다)간에도 부조화현상이 존재한다. 회사법 제18조는 “外商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外商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에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三資기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三資기업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회사법과 三資기업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다. 반면에 三資기업법은 외상이 투자한 유한회사에는 주주총회와 감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률의 부조화, 입법상의 雙軌制(2원화된 입법)는 中資유한회사와 外資유한회사에 대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3)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입법의 결여

일정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시장경제는 바로 경쟁경제이다.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하고 완비된 경쟁환경을 창조하고 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1993년말 부터 〈中華人民共和國反不正當競爭法 :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였으며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정경쟁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 경쟁제한행위는 경쟁제한 담합,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의 경제독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방봉쇄, 부문별 분할도 정부·정부부문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독점의 주요형태이다. 경쟁제한행위의 존재는 통일적인 개방, 경쟁질서시장의 확립에 장애가 되어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초적인 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

(4) 정부경제직능을 규율한 입법의 미흡

중국시장경제의 확립과 발전은 정부의 조직과 추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몇 가지 법률을 공포한 바 있지만 본인은 이러한 법률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중국의 행정조직입법은 아직 완비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경제적 직능에 대한 규범은 원칙적인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 실행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먼저 현행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組織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조직법〉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여 畧文이 겨우 11조이고 그 중에서 국무원 직능에 대한 규정은 “경제업무와 도시·농촌(城鄉)건설을 영도하고 관리한다”라는 한 개 條에 불과하다. 다음 국무원의 조직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은행, 審計署와 監察部의 조직과 직권을 관련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외경제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을 포함하는 기타 부문의 임무와 직책 등은 국무원의 행정문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범성·안정성·권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中華人民共和國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和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 중화인민공화국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조직법과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등 두 개를 하나로 만든(合二而一)입법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내용도 번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행정조직법의 상황은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직능을 행사하는 데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대다수의 국가들은 모두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 중의 하나는 개방성과 국제성에 있으며 중국의 시장경제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시장경제는 개방성 경제이며 중국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접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개방의 행보를 가속화하여야 하며, 세계각국 특히 선진국의 현대사회화가 반영되어 생산과 상품경제에 일반화되어 있는 모든 선진경영방식과 관리방법을 흡수하고 차용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이에 부응하려면, 중국은 그 밖에도 반드시 시장경제공동규율에 부합되고 중국 국내상황에 적합한 건전하고 완비된 경제법

률제도를 가급적 빨리 확립하고, 아울러 중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계와 상통하는 안정적·통일적 법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경제는 더욱 훌륭하게 국제시장과 접목되어 세계로 뻗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건전하고 완전한 시장경제법률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국으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자신의 개혁개방이후의 축적된 경험에만 의존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할 것이며 반드시 국외의 성공한 입법경험을 과감히 차용하고 흡수하여야 한다. 중국이 제정하여야 할 시장경제관련 법률이 본질적으로 시장거래의 규정이며 이러한 규칙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의 성공한 경험은 수십년 내지 1, 2백년 동안의 시장경제역사를 가진 국가 특히 선진국이 시장경제에 대한 운용메커니즘을 통하여 규율을 발전시켰으며 그 법률조정은 장기간 진행된 실천, 탐색, 연구, 결산으로 획득된 것이므로 보편적인 적용가치가 있으며, 전인류의 법률문화의 부단한 진보와 법률제도의 부단한 발전의 귀중한 결정체이며 전세계시장경제국가의 공동의 재산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중국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수년동안의 중국시장경제입법은 국내법률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공동규율을 반영한 법률개념, 법률원칙 및 법률제도에 대하여 각국의 성공한 입법경험과 판례, 학설을 모두 대담하게 흡수하고 차용하고 있다. 작년에 공포된 신계약법에서 이 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시장의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고 정보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역방식이 부단히 출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전지구의 경제단일화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장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시장경제는 급속하게 국제경제속으로 융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입법도 필연적으로 국제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며 중국시장경제입법중의 많은 원칙, 제도 및 구체적 규범 등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 판례의 내용과 상호 조화되거나 더 나아가 일치되어야 한다. 21세기 국제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직면하여 WTO가입요건에 근거하여 중국시장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필자는 중국이 현재 다그쳐 제정·완비하여야 할 시장경제관련 분야의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의 정리 및 완화된 법률환경의 조성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특정한 시기에 시행된 일종의 특수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혁개방초기, 일부 기업들을 각각 제한, 장려하거나 완화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유지·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각급주관부문이 첩첩산중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가 과다남용됨에 따라 기업설립의 정상적인 수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시장개방원칙에 따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국무원의 지시에 의거하여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를 정리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는 바, 600여건의 법률, 법규 및 문건을 조사하여 법률로 제한을 받은 업무 또는 항목 37항, 행정법규로 제한을 받은 업무행위 또는 항목 50항,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의 발송문서에 의하여 제한받는 업무 또는 항목은 30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공상행정관리국과 기타 부문이 공동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여 제한 받는 업무와 항목은 36항 등 이상과 같은 총 153항을 찾아내었다. 또한,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의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 대상이 되는 업무 또는 항목은 400여항에 달하였다.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이러한 정리결과를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엄격한 선정작업을 하여 필수적인 것만 유보하여 주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품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완화된 법률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물권법 제정, 재산귀속관계의 명료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한 걸음 한 걸음 물권법률제도를 확립하여왔다. 그러나, 민법통칙중에서 물권에 관한 규정은 너무 간단하여 재산귀속관계를 규범화한 기본규율규칙이 결여되어 있어 그 완비가 시급하다. 1994년 중국 입법기관은 물권법 제정을 입법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 起草작업의 착수가 늦어졌다. 1998년 3월 입법기관은 江平, 梁慧星 등 9인으로 구성된 민법기초작업팀에게 중국민법전 편찬과 물권법초안준비작업의 임무를 맡겼다. 이 팀은 梁慧星에게 물권법 초안작성을 위탁하고 1999년 10월 양혜성의 지도하의 중국물권법연구과제팀은 입법기관에 중국물권법초안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건의안은 12장 4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용익물권에 기지사용권, 농지사용권,

인접지이용권, 임대권을 포함시키고 있고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물권을 포함시키는 등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권법초안 건의안과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한 빨리 중화인민공화국입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산귀속관계를 규범화하고 재산귀속질서를 보장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필요에 더욱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실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3) 독점금지법과 덤핑방지법의 제정, 공정경쟁의 시장질서 유지·보호

독점금지법(反壟斷法)은 독점과 기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독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시장구조의 불합리는 경쟁메커니즘의 상실을 유도하게 되므로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정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독점금지법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중국이 제정하는 독점금지법은 중국의 실제상황에 부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일련의 규정을 통하여 담합, 우월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합병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독점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정부와 정부부문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독점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련의 규정을 통하여 시장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국제카르텔을 금지하여 하다고 생각한다. 즉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외부에서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덤핑방지법(反傾銷法)은 반덤핑의 기준, 덤핑방지조치, 덤핑으로 인한 손해의 제거 등에 관한 법률이다. 덤핑행위는 실제로 일종의 부정경쟁행위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해 상품을 덤핑 수출하였는 바, 예컨대, 신문의지의 경우, 1997년 국제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은 톤당 550달러였는데 중국시장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톤당 480원이었다. 이와 반대로 국제시장에서 일부국가는 중국상품의 반덤핑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구두, 라이터, 연필 등이 덤핑제조를 당하여 무거운 덤핑관세가 부과된 적이 있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분야 관련 법률로는 1997년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反補貼條例：중화인민공화국덤핑방지및보조금방지조례〉(이하 “덤핑방지조례(反傾銷條例)”)이라 한다)가 있을 뿐이다.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을 유

지·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현재의 덤핑방지조례에 기초하여 덤핑방지법을 제정하여 외국이 공정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중국에 상품을 덤핑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민족공업을 보호하고 중국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법의 개정, 회사제도의 완비

중국의 회사법은 1994년 7월부터 5년 이상 시행되어 왔으며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 주주 및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시정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회사관련입법은 몇 가지 문제 특히 다음 3가지 점에서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다. 첫째, 회사법과 관련 법률간의 부조화문제이다. 둘째 회사법 자체의 존재문제이다. 즉 회사법 자신의 존재문제라 함은 그 첫번째가 회사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과 주주출자납입규정과 같은 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회사관리구조와 같은 적지 아니한 문제들의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회사법을 완비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차 회의는 회사법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회사법이 실시된 이후, 동 법에 대한 첫 번째 개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현재의 중국이 개별적으로 급히 필요한 실제문제에 대해서만 회사법의 관련조문을 개정한 것일 뿐인 바, 다시 말해서 국유독점기업의 외부감사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기술주식회사가 공업산업권과 비특허기술을 출자액을 환산하여 점유할 수 있는 회사등록자본의 비율 그리고 신주발행과 주식상장신청에 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었다.

필자는 시장경제의 필요에 적응하고 중국의 회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회사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회사법의 개정은 먼저 중국자본회사와 외국자본회사 모두에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회사제도는 인류의 공동재산이므로 중국의 회사법의 개정은 중국의 실제와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회사입법의 경험을 과감하게 흡수·차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권자본인수제도, 회사설립무효제도, 독립이사제도, 소액주주보호와 회사채권자보호제도 등등이다. 개정후의 중국의 회사법은 중국의 실제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접목되는 현대화된 회사법이 되어야 한다.

(5) 금융분야의 법률 완비, 금융시장의 전지구화에 적응할 필요성

중국이 조만간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시장은 차츰 전지구 금융시장일체화의 행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외국금융기구들이 차츰 중국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여러 가지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현재 준비중인 조치는 외자은행, 외자보험회사가 중국자본회사와 함께 일부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 중외합작투자기금을 설치하는 형식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중외합작기업과 외자기업이 중국국내시장에 상장하는 것,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자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중국국내주식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허용하는 것 등이다.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은 중국금융업무 기업으로 하여금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경제체제개혁의 행보를 서두르고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게 할 것이다. 중국금융기업이 외자기업의 경쟁가운데서 생존, 발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은 반드시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상응하는 관련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법률은 그 내용면에서 시장경제운용규율과 부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무역일반협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국이 현재 구상중인 단계적인 금융시장개방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중국금융분야의 법률이 서비스무역일반협정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현행 상업은행법, 보험법 및 증권법 등 관련법률에 대해서 개정과 완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제관례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투자기금법과 先物法 등의 법률의 제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점차 중국금융분야의 법률이 건전해지고 완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稅收 및 사회보장 등의 관련 시장경제분야의 법률도 중국이 가능한 빨리 제정, 개정, 완비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여 중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의 통일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전하고 완비된 시장경제법률제도는 중국으로서는 막중하고 힘든 임무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개방 20년간의 시장경제체제개혁과 시장경제법제건설의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일본, 한국

을 포함하여 발달된 국가의 시장경제운영메커니즘과 법제건설분야의 성공적인 경험도 우리가 차용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21세기 중국의 시장경제는 더욱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며 중국시장경제법률제도는 향후 날이 갈수록 건전해지고 완비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번영부강의 길로 나가도록 할 것임을 확신한다.